

공 고
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, 동법 제6조의2 휴업·폐업신고, 동법 제31조 감독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체에 위반법령 및 관련 내용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현장 확인 한 바 영업소재지 타업종 변경,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등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1. 10. 7.
안 산 소 방 서 장

1. 공고기간 : 2021.10.7. ~ 10.22.(16일간)
2. 공고 및 게시장소 : 안산소방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근거법령 :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), 동법 제6조의2(휴업·폐업신고), 동법 제31조(감독),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4. 공시송달대상

업체명	영업소재지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위반법령	조치계획
(주)뷰라이트 김**	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85 시화공단 4마 2**호(성곡동)	섬유류방염업 (경기안산제2011-04호)	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(등록사항의변경신고) 제6조의2(휴업·폐업신고) 제31조(감독)	홈페이지 게시 후 기간 도래 시 직권 폐업(휴업) 조치 예정

5. 공사 송달 내용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후 기간 도래 시 직권 폐업(휴업)조치 예정.
 - 가. 위 공고 기간 내 조치계획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면 직권으로 폐업(휴업)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(☎031-470-731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10월 7일

안 산 소 방 서 장

